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39호 2016. 6. 1 (수)

선 결	기관의 장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6 - 592호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가조골프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2

거창군 공고 제2016 - 593호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거창군 공고 제2016 - 595호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 현금 공시송달 공고 10

거창군 공고 제2016 - 598호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11

회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가조골프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0-668호(2010.12.09.)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가조골프장)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6. 05. 27.

거 창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산4-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가조골프장)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인가 사항
 - 가) 시행면적 : 571,765.4㎡
 - 나) 시행규모 : 대중골프장 9홀, 클럽하우스 등
 - 다) 토지이용계획

(단위:㎡)

구 분	계	체육시설	건축시설	공공시설	녹지	비고
전 체	571,765.4	129,083	6,957	48,442	387,283.4	
금 회	571,765.4	129,083	6,957	48,442	387,283.4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공동시행)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 성명 : 거창군수
 -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 성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창섭)
- 5. 사업기간 : 2011. 12. 1 ~ 2016. 6. 30
- 6.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학교급식지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주체를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개편하여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급식지원 운영 체계를 구축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체계 보완(안 제8조)
 - 나. 운영위원회 구성 현행화(안 제9조)
 - 다.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우편번호 50147] 에게 서면이나 메일(gomju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마을만들기과 로컬푸드담당 **☎(055)940-81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6 ~
----------	--------

제출연월일	2016. 5. .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학교급식지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주체를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개편하여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급식지원 운영 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센터 운영 체계 보완(안 제8조)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운영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차기 정기회의 시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나. 위원 구성의 현행화(안 제9조)

-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함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다. 기능 현행화(안 제10조)

- 운영관련 불합리한 사유 발견 시 시정요구권한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 (가) 예고기간 : 2016. 5. 19. ~ 6. 7.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을 신설한다.

제9조제1항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2항 “운영위원장은 학교급식관련 담당과장이 되고,”를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또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위원회 위원은”을 “운영위원회 위원은 거창군 급식지원담당주사,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보건급식담당주사를 당연직으로 하고”로 하고, 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제7호“군내 교원단체 추천인”을 “군내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인”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각호를 지정 한다.

1. 수탁기관 관리자
2.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3.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4. 군내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군내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인
6. 군내 시민단체 추천인
7.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10조제3호 중 “점검”을 “점검과 불합리한 사유 발견 시 시정요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p> <p>①~⑦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blue;"><신 설></p> <p>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 -----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운영위원회의 <u>운영위원장은 학교급식 관련 담당과장이 되고</u>,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보건급식 담당주사 3.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4.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조리사 5.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6. 군내 학부모 단체 추천인 7. 군내 교원단체 추천인 8. 군내 시민단체 추천인 9. 그밖에 군수가 인정한 사람 	<p>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p> <p>①~⑦ (현행과 같음)</p> <p>⑧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운영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차기 정기회의시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 ----- 15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u>운영위원장</u>,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거창군 급식지원담당주사,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급식담당주사를 당연직으로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p style="color: blue;"><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p style="color: blue;"><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4. 군내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군내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인 6. 군내 시민단체 추천인 7. 그밖에 군수가 인정한 사람

<p>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월별 학교급식 공급가격 결정 3. 월별 급식지원센터 운영사항 <u>점검</u> 4. 운영인력, 집행, 경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p>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u>점검과</u> <u>불합리한 사유 발견시 시정요구</u> 4.----- 5.-----
--	--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시행 2013.11.23.] [법률 제11771호, 2013.5.22., 일부개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거창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 거창군 세입 귀속
3. 공고기간 : 2016. 6. 1. ~ 2016. 6. 15.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현금종류	예치자	수납일자	금액(원)	비고
일시에탁금	김*환	2011. 1.11.	12,050	
일시에탁금	박*임	2011. 3. 4.	145,170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거창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거창군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거창군 재무과 경리담당 (☎ 055-940-3245)

2016년 6월 1일

거창군수

2016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거창군수

1. 개별공시지가 개요

- 가. 결정·공시일 : 2016. 5. 31.
- 나. 개별토지단위면적 : 원/m²
- 다. 결정대상 필지수 : 239,626필지

2. 필지별 지가 열람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3. 이의신청

- 가. 기 간 : 2016. 5. 31. ~ 6. 30.
- 나. 제출사항 : 토지 이용상황, 표준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적정 여부
- 다. 제출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라. 제출처 : 군청 재무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 마. 제출방법 : 군청 및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재조사 후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
- 나.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940 - 3866)